

2026년 제3회 경기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경기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직위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인원	임용 기간	주 요 업 무
AI국장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부이사관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정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AI) 및 기반 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추진 ○ 도민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추진 ○ AI기반의 행정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융합 기획·활용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 정보자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보도기획담당관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서기관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기획담당관실 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정이슈관리 및 정책 기획·보도 생산에 관한 사항 -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 보도자료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 연설문 등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종합 모니터링 및 보도 분석에 관한 사항
법무담당관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서기관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담당관 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규칙·심의의 운영, 자치법규 정비 등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 - 소송 수행 지원, 법률자문 제공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취약계층의 무료소송 지원 - 상가건물 및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청문제도 운영

2. 법령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라.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3. 임용신분

- 가.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나.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기(계약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4.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 · 성별 · 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임용자격요건

○ 다음 각 항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면 됨

구분		〈 시국장 〉
경 력 요 건	학력기준 (1)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2)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5 및 별표6 참고
	공무원 경력기준 (3)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4)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 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실적요건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인공지능, 데이터, IT 등 디지털 분야 관련 근무경력		

구분		〈 보도기획담당관 〉
경 력 요 건	학력기준 (1)	<p>《박사학위 소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p>《석사학위 이하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p>* 자격증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5 및 별표6 참고</p>
	공무원 경력기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p>※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 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p>
실적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홍보 또는 대외협력 등 관련 근무경력		

구분		〈 법무담당관 〉
경 력 요 건	학력기준 (1)	<p>《박사학위 소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p>《석사학위 이하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p>* 자격증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5 및 별표6 참고</p>
	공무원 경력기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p>※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 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p>
실적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 관련분야 : 송무 및 법률자문 관련 근무경력</p> <p>※ 자격필수요건 : 변호사 자격 소지자</p>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 임용자격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요건 (능력요건,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 전달 및 협상 능력
 - 특별요건 : 자격증, 외국어·정보화 능력, 특수분야 전문지식, 기타 우대요건 등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1. 2.(월) ~ 11. 6.(금) / 5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번호 문자 개별 통보

○ 방문접수

-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 (응시수수료) 개방형 3호, 4호 : 1만원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 서류 안내(기준일: 원서 접수일 현재)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가급적 빠른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은 16:30 까지 가능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16시 30분 이후 접수건에 한하여, 다음날 우편통상환을 구입·발송하여야 함
(단,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송하여야 함)

- 우편봉투 겉면에 '**2026년 제3회 경기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다.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 경기도인재채용관(경기도인재개발원 내 위치)

○ 주소 : (우편번호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채용관(구 온누리관)

※ '경기도청 광고 신청사'가 아닌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우측에 위치한 경기도인재채용관'임에 유의



7.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응시원서 접수	2026. 11. 2.(월) ~ 11. 6.(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 11. 19.(목) 전 · 후
면접시험 ※면접시험일정은 서류합격자 발표 공고 시 최종 확정됨	2026. 11. 25.(수) ~ 11. 27.(금)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임용예정시기	2026. 12월 중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s://www.gg.go.kr> 접속 → 뉴스 → 공무원 임용시험 → 임기제·개방형 직위 → 합격자 발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보수수준

가. 경력직 공무원 :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 :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예정 분야	연봉등급	상한액	하한액
AI국장	개방형 3호	—	82,072천원
보도기획담당관	개방형 4호	—	70,490천원
법무담당관	개방형 4호	—	70,490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양면인쇄 금지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인재채용팀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원서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필수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필수
7.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7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필수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필수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10. 경력증명서	○ <u>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u>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u>시간제 근무</u> ,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u>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u> 해야 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시 2년 인정)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u>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u>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u>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u>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11. 기타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 제출
※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가급적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권고 	

10. 기타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력사항의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담당 업무와 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가급적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권고하며, 제출된 증명서류 상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가 예상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자가 없는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서 받은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를 공개합니다.
 -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63, 4064, 4045)
 -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 분야	직무관련 주무부서	연락처
AI국장	AI프런티어정책과	031-8008-3870
보도기획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031-8008-3057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031-8008-2874